

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사실 통지서

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

수집 정보	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	[]
	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	[]
	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3호·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·직불카드·선불카드의 사용일시, 사용장소	[]
	「의료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,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	[]

수집된 정보는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실종아동등 발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, 실종아동등 발견 등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.

년 월 일

소속관서장직인